

—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 영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7월 9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7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7월 16일

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소득증대를 통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소득지원 융자금 이자를 경감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소득지원기금 융자 이자의 종전 5%에서 3%로 금리를 경감
(안 제5조2항)
-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기간 연장시 연장기간중 이자 면제(안 5조3항)
- 상환기간을 경과한 융자금에 연체이자 산출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수탁금융기관의 관례에 따라 적용하였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분쟁 방지(안 10조2항)

라. 참고사항

- 가계일반 신용대출 이자 대비표(조례 제정시와 현재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한 조례로서 최근 시중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으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용자대상 주민의 이자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개정 조례안임.
- 또한,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기간 연장시 이자를 면제하고, 연체이자를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적용 등 주민부담 경감과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조례안으로 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